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. 6. 29 선고 2020가단1194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승준

변 론 종 결 2021. 6. 8.

판 결 선 고 2021. 6. 29.

주 문

1. E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2. 4. 체결한 매매예약을 8,234,54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8,234,5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3. 6. 28. 주식회사 F로부터 E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여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19498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3. 31. ‘E는 원고에게 2,978,200원 및 그 중 2,068,410원에 대하여 2013. 6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67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려, 위 지급명령은 2016. 4. 20. 확정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지급명령’이라 한다). 나.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양수금채권(이하 ‘이 사건 양수금채권’이라 한다)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. 10. 23.을 기준으로 8,234,547원이다.

다. E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20. 2. 4. 딸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예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예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가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 라.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. 12. 1. 이 사건 매매예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. E는 같은 날 G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,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7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피고가 E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함으로써,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미 채무자인 E에게 복귀되었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는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(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).

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. 12. 1. 이 사건 매매예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와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날 연속하는 접수번호로 접수되었는바, 피고와 E가 모녀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면 E가 곧바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리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 점, ②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E에게 원상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, ③ 피고는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실현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G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한 피고의 권리를 이전받아
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친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한바,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면, 원고가 G를 상대로 E와 G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, G이 이 사건 가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,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E와 G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그 결과 E와 G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이 실현되어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E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E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를 비롯한 E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

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할 것이어서, 원고의 채권액인 8,234,547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8,234,5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지원

별지

목 록

1. 경남 합천군 H

[도로명주소] 경상남도 합천군 I

위 지상

목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29.75㎡

부속건물 목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6.53㎡

2. 경남 합천군 H 대 213㎡. 끝.